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년 9월 2일, 대통령령 제 14,759호

개정이유

건축사법이 개정(1995. 1. 5. 법률 제 491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건축사시험을 건축사자격시험과 건축사예비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0조)
- 나.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설계도서를 신

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함(영 제21조)

다.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종별에 따른 등록기준·업무범위·책임범위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영 제23조)

라. 건축사협회에 건축사신고의 수리,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건축분야의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 제2항)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4조제3항”을 “건축법 제19조 단서”로, “서울특별시상. 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또는 또는”을 “특별시장·광역시상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4조제3항에 의한”을 “건축법 제19조 단서에서”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작성 또는 인정하거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관련된 군사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1항중 “건축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법 제14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건축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초본

2. 호적초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기사1급 자격증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사본(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경력증명서

제5조제1항중 “시험”을 “건축사자격시험”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2(면허취소 등)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

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광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기초·기둥·보·벽·바닥·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건축설계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초본
2. 경력증명서
3. 학력증명서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가. 건축법규
나. 건축설계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가. 건축구조
나. 건축시공
다. 건축계획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합격기준)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건축법규 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②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조중 “시험”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으로 한다.

제12조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으로 한다.

제13조중 “시험”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중 “시험”을 각각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법 제14조”를 “법 제14조 제1항 및 법 제15조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건축허가신청전에”를 “건축허가신청후 7일 이내에”로,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건축사협회”로 하고, 동항 단서중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방위산업시설인 경우와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변경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협회”를 “건축사협회”로, “당해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도서가 건축물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2(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업무수행) 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자(이하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라 한다)가 건축사사무소개설

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등록신청) 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사본
2.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에 한한다)

제2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나 등록갱신신청”으로 “본인에게 등록증을”을 “등록증을”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축사사무소 등록갱신신청) 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에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등록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 및 건축사보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건축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및 제29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2(청문절차) ① 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사유 및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 3(등록말소사유) 법 제29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취소한 때를 말한다.

제30조의 제목“(건축사 보수교육)”을 “(건축사 등의 연수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사보수교육”을 “연수교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수교육”을 “연수교육”으로 한다.

제31조중 “협회”를 “건축사협회”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협회”를 “건축사협회”로 한다.

제34조 제1항중 “법 제41조 제2항”을 “법 제41조 제3항”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23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수리

〈별표3〉

위반행위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제34조제3항관련)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 법 제41조제1항 제1호 | 100만원이하 |
|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 법 제41조제1항 제1호 | 100만원이하 |
|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41조제1항 제2호 |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
| 4. 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생년월일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이상인 때 | 법 제41조제2항 | 3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
| 5. 법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때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 법 제41조제2항 |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50만원이하 |
| 6.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 미만인 때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때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 법 제41조제2항 |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30만원이하 40만원이하 50만원이하 |
| 7.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 미만인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이상인 때 | 법 제41조제2항 |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30만원이하 |

3.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및 등록말소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수리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3.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수리

③ 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수탁기간의 장의 보고)”를 “(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보수교육”을 “연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종합공사감리란의 방법란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표 제2호 상주공사감리란의 대상란중 “건축법 제6조제3항”을 “건축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 현 행 | 개 정 |
|--|--|
| <p>의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p> <p>1. (생략) 2. 신원증명서 3. 학력증명서</p> <p>4. (생략)</p> <p>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4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에 응시하게 한 경우에 당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건축사면허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 면허를 하여야 한다</p> <p>②~④ (생략)</p> <p>제6조(신상변동신고 등) ① 건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상변동 신고서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본적 2. ~5. (생략) ② (생략)</p> <p>제6조의2(면허증 등의 갱신) ①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갱신하며, 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 및 면허수첩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 갱신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신원증명서 2. 면허증 및 면허수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내에 갱신을 받지 아니한 면</p> | <p>.....</p> <p>.....</p> <p>.....</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p> <p>.....</p> <p>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 2. 호적초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기사1급자격증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사본(법 제14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5조(건축사면허 등)①</p> <p>.....</p> <p>.....</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신상변동신고 등) ①</p> <p>.....</p> <p>.....</p> <p><삭제> 2.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면허취소 등)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 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 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기초·기둥·보·벽·바닥·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p> |

| 현행 | 개정 |
|--|---|
| <p><u>허증 및 면허수첩은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u></p> <p><u>제7조(시험방법 등)①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 시험으로 실시하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수 있다.</u></p> <p>〈신설〉</p> <p>〈신설〉</p> <p><u>제8조(시험과목 등)①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u> <u>1.제1차시험과목</u> <u>가.건축과목</u> <u>나.건축시공</u> <u>다.건축법규</u> <u>라.건축사</u> <u>2.제2차시험과목</u> <u>가.건축계획</u> <u>나.건축설계</u> <u>②~③생략</u></p> <p><u>제9조(시험과목의 면제)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은 자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및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 <u>1.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법규이외의 과목 및 제2차시험과목중 건축설계 이외의 과목을 면제한다.</u> <u>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시공분야의 기술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시공과목을 면제</u></p> | <p><u>제7조(시험과목의 면제)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건축설계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u>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u>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u> <u>1.주민등록표초본</u> <u>2.경력증명서</u> <u>3.학력증명서</u></p> <p><u>제8조(시험과목)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u> <u>1.건축사자격시험과목</u> <u>가.건축법규</u> <u>나.건축설계</u> <u>2.건축사예비시험과목</u> <u>가.건축구조</u> <u>나.건축시공</u> <u>다.건축계획</u> <u>②~③(현행과 같음)</u></p> <p><u>제9조(시험방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 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u></p> |

| 현행 | 개정 |
|--|---|
| <p>한다.</p> <p>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분야의 기술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구조과목을 면제한다.</p> <p>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시공 및 건축법규과목을 면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합격기준)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평균성적 6할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p> <p>제11조(시험시행공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판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경력 인정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p> <p>제13조(건축사위원회)시험과 건축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생략)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④(생략)</p> <p>제1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4.(생략)</p> | <p>제10조(합격기준)①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건축법규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②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p> <p>제11조(시험시행공고).....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p> <p>제12조(경력 인정기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p> <p>제13조(건축사위원회)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p> <p>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④(현행과 같음)</p> <p>제15조(기능)..... 1.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2.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3.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4.(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 |
|---|--|
| <p>제21조(설계도서의 신고 등)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건축허가신청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설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도서가 건축물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 <p>제21조(설계도서의 신고 등)</p> <p>① 건축허가 신청후 7일 이내에 건축사협회</p> <p>방위산업시설인 경우와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변경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건축사협회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
| <p>〈신설〉</p> <p>제22조(등록신청)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력서 2. 신원증명서 3. 면허증사본 4.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5. 시설보유증명서 6. 사무소안내도 7.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p>제21조의2(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의 업무수행)①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라 한다)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
| <p>제23조(등록기준)①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에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②~③(생략)</p> | <p>제22조(등록신청)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증사본 2.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에 한한다) <p>제23조(등록기준) 〈삭제〉</p> <p>②~③(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 |
|---|--|
| <p>제24조(등록증의 교부 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의 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25조(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 등)①단독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는 10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5층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p> <p>②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수이상의 건축사를 당해 건축물에 대한 책임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p> <p>1.건축물의 규모가 10층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1인이상</p> <p>2.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2인이상</p> <p>3.건축물의 규모가 2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3인이상</p> <p>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p> <p>1.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p> <p>2.건축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에 사용하는 조서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조사 및 검사를 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p> <p>제26조(건축사의 연대 책임)종합건축사사무소 개설자(책임건축사를 정한 경우에는 책임건축사)가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범위는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당해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련된 건축관계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이행으로 한다.</p> <p>제29조(등록사항 등의 변경신고)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p> <p>②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종합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소속 건축사)이 당해 개설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건설교통부장</p> | <p>제24조(등록증의 교부 등)①.....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나 등록갱신신청을..... 등록증을.....</p> <p>②(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축사사무소 등록갱신신청) 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에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29조(등록사항 등의 변경 신고)①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 및 건축사보를 말한다.</p> <p>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건축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p> |

현 행 개 정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30조(건축사보수교육)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일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보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1.(생략)

제32조(사업)협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1.건축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건축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 3.회원의 교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4.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3조(보고)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청문절차)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사유 및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3(등록말소사유)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취소한 때를 말한다.

제30조(건축사 등의 연수교육).....

① 연수교육

②(현행과 같음).....

③ 연수교육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

1~11(현행과 같음)

〈삭제〉

제33조(보고)건축사협회

| 현행 | 개정 |
|---|---|
| <p>제34조(과태료의 부과)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③(생략)</p> <p>제35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2.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3.법 제23조·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4.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및 건축사사무소의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 5.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권한 6.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 7.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에 관한권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신설></p> <p>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p> <p>제36조(수탁기관의 장의 보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 <p>제34조(과태료의 부과)①법 제41조제3항 ②~③(현행과 같음)</p> <p>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삭제></p> <p>1. 신고의수리 2.법 제23조 및 법 제27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및 등록말소 4. 검사 <삭제> 5. 부과·징수 부과·징수를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1.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수리 2.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3.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수리 ③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④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 등 명령 또는 처분등</p> <p>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연수교육 연수교육</p> |